## 《증보문헌비고》의 《선거고》를 통하여 본 중세 우리 나라 음서제도에 대한 리해

리 명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합대학 교원,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군사 등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과학문화유산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14권 456폐지)

중세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의 벼슬등용에는 과거와 인재천거(천용) 및 음서를 통한 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의 《선거고》에서는 《과제》(科制)와 《천용》 (薦用)、《음서》(蔭敍)조목으로 나누어 취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서란 봉건사회에서 《조상의 덕》으로 그 자손들을 벼슬자리에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충관료배들의 자손들이나 봉건왕실의 후손들, 봉건국가 와 국왕을 위해 《공로》를 세운자들의 자손들이 그 《덕》으로 벼슬에 등용되는것을 말한다. 음 서로 받은 벼슬을 음직, 음관이라고도 한다.

《선거고》의《음서》조에는 중세 우리 나라 벼슬등용의 한 갈래로서의 음서에 관한 자료가 세나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로 구분되여 년대별로 종합적으로 수록되여있다.

《음서》조에 반영된 음서관계자료를 통하여 중세 우리 나라의 음서제도에 대한 보다 폭넓고 정확한 리해를 가질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음서》조에 반영된 음서관계자료들을 가지고 음서의 실상에 대하여 몇가 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음서의 발생이다.

《선거고》의《음서》조에는 신라 진평왕 33년(611)에 가잠성이 백제에 의하여 함락되고여기에서 찬덕이 죽자 그의 공덕을 찬양하여 그의 아들 해론을 대나마로 임명하였으며 성덕왕 32년(733)에 김윤중이 김유신의 적손이라 하여 그를 대아찬으로 임명하였다는 신라시기의 자료가 실려있다.(《증보문헌비고》 권200《선거고》 17《음서》)

이것을 보면 음서가 세나라시기 신라에서 발생하였던것으로 리해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 런것이 아니다.

《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246) 10월조에는 다음의 기사가 실려있다.

《왕이 귀국하여 공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밀우와 뉴유의 공로를 제1등으로 하고 밀우에게는 거곡과 청목곡을 주고 옥구에게는 압록과 두눌하원을 주어 식읍을 삼게 하고 뉴유에게는 구사자를 추증하고 또한 뉴유의 아들 다우는 대사자로 삼았다.》

이 기사는 246년 10월 두차례에 걸친 외적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자만한 고 구려의 동천왕이 아무런 타산도 없이 적군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곤경에 빠졌을 때 결사대 를 무어 왕을 무사히 빠지게 한 밀우와 부상을 당하고 전장에 쓰러진 그를 구원해온 류옥 구 그리고 검질기게 추격하는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계책을 꾸며 적들과 싸우다가 죽은 뉴유의 공로를 평가한 내용이다.

이 사료는 아버지의 공로에 의해 그 아들이 벼슬을 받은 실례중의 가장 오랜것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기사가 《선거고》의 《음서》조에 실려있지 않은것은 편찬자의 신라 중심력사관에 기인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음서는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이며 세나라시기 정치, 경제, 문화가 가장 발전하였던 고구려에서 3세기 중엽에 발생하였으며 그후 신라의 관리등용에도 적용되였다.

당시 봉건사회에서 그 사회제도를 위해 《공로》를 세운자들과 그 자손들을 우대하는것 은 그 사회성원모두를 정권을 장악한 봉건지배계급을 위하여 더 잘 복종하고 헌신하도록 하 는데서 중요한 공간으로 되였다고 할수 있다.

둘째로, 음서의 적용대상자이다.

《선거고》의 《음서》조에는 음서의 적용대상자와 관련한 자료가 다분히 수록되여있다.

세나라시기에는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어떤 기회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의 자손에 한하여 임금이 직접 벼슬에 등용하였다. 말하자면 특정한 공신의 자손이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었다. 고구려에서 공신의 친아들에게 음서를 적용하였다면(《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 10월조) 신라에서는 공신의 친손자에게 음서가 적용되였다.(《증보문헌비고》권200《선거고》17《음서》) 즉 세나라시기에는 공신의 아들, 친손자가 음서의 대상으로 되었다.

고려시기에는 음서적용대상자가 공신뿐아니라 문무 5품이상의 자손으로 확대되였다. 물론 고려성립초기에는 세나라시기와 같이 임금이 공신들의 자손 몇명에게 국왕의 명의로 벼슬을 주었다. 태조 10년(927)에 개국공신들인 신숭겸, 김락이 죽은데 대하여 애석하게 여기고 김락의 동생 김철, 신숭겸의 동생 신능길, 아들 보장을 모두 원윤(元允)으로 등용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200《선거고》17《음서》)

고려 목종이 즉위(997)하여 《문무 5품이상의 자손들에게 음직을 주라.》(음직출신들은 모두 나이를 18살로 제한하였음.)고 지시한 때로부터 개별적인 몇명의 자손들에게 실시하던 음서가 문무 5품이상의 자손들에게 적용실시되였다.(《증보문헌비고》 권200《선거고》17《음서》) 이것은 이때부터 음서가 하나의 제도로 확립되었음을 말해주는것으로 된다.

10세기 중엽부터 왕권에 대립된 대봉건세력들을 청산하고 봉건특권충들로 하여금 왕 권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고려건국초기에 왕건은 국토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국공신》들을 적극 우대하는 한편 여러 봉건세력들에 대한 포섭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수많은 지방호족들의 딸들을 왕비로 삼음으로써 봉건세력들의 할거를 막고 그들과 계급적 및 혈연적결탁을 강화하였다. 그러면서도 왕권에 저항하는 대봉건관료들의 세력집중을 막기 위하여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고려성립후 국가는 봉건통치제도의 재정비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기울이였다. 그리하여 995년에 중앙통치기구가 개정되였으며 지방통치기구체계가 완비되여 자기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였다. 이것은 음서제도성립의 전제로 되였다.

음서제도가 성립될수 있은 실제적인 조건들도 마련되였다.

이 시기 음서제도에서 기본은 문무 5품이상 관리의 자손들을 벼슬에 등용하는것이였는데 성종은 자기의 통치기간에 문무 5품이상의 관리들을 그 이하 관리들과 엄격히 구별 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회력사적전제밑에 997년 10월 성종의 뒤를 이어 고려 7대왕으로 즉위한 목종은 왕위에 오른지 두달밖에 안되는 12월에 5품이상 문무관리의 아들들에게 음직을 줄데 대한 지시를 내리였는바 그것은 음서가 하나의 제도적조치로 되였음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이때부터 음서에 의한 관리등용은 개별적인 지배계급의 자손 한두명에게 국한된것이 아니라 공신 및 5품이상 관리의 자손들에게 다 해당되었으며 합법적인 관리등용제도로 되였다.

그리하여 고려시기 음서는 과거제도, 인재추천등용제도와 함께 관리등용제도의 기본으로 되였고 지배계급상층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고 봉건국가의 통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게 되였다.

그러면 고려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증보문헌비고》권200《선거고》17의《음서》조에는 고려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와 관련한 기사가 기록되여있다.

그것은 예종 3년(1108)에 《서경과 개경의 문무반 5품이상에 관하여 각각 아들 한명에 게만 음직을 허락하며 친아들이 없는자는 양아들 및 손자를 취하는것을 허락한다.》고 지시한것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이 시기 문무 5품이상에 한하여 친아들 한명에게만 음직을 주었으며 친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아들 및 손자를 취한다는것이다.

인종 12년(1134)에 이르러서는 《치사한자 및 현임재상의 친아들은 군기시 주부 동정으로, 그의 수양자 및 친손자와 외손자, 방계혈족의 조카는 량온서 령 동정으로 임명하며 전대 재상의 친아들은 량온서 령 동정으로, 그의 친손자와 외손자는 령사(令史) 동정으로 임명한다. 추밀원장관의 친아들은 량온서 령 동정으로, 그의 수양자 및 친손자, 외손자, 방계혈족의 조카는 량온서 승 동정으로 임명한다. 좌복야, 우복야와 6상서이하의 문무 정3품관의 친아들은 량온서 령 동정으로, 그의 수양자 및 친손자, 방계혈족의 조카는 주사동정으로 임명한다. 종3품관의 친아들은 량온서 령 동정으로 그의 수양자 및 친손자, 외손자, 생질은 령사 동정으로 임명한다. 정4품, 종4품관의 친아들은 량온서 승 동정으로 임명한다. 하며 정5품, 종5품관의 친아들은 주사 동정으로 임명한다.》고 결정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이 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치사한 재상 및 현임재상의 친아들, 그들의 수양자 및 친손자와 외손자, 조카들과 전대 재상의 친아들, 친손자, 외손자, 문무 3품관의 친아들, 친손자, 외손자, 조카가 있으며 4품관과 5품관의 친아들로 되여있다는 것이다.

경효왕(충렬왕) 8년(1282)에 이르러서는 《치사한 문무 3품이상에게는 아들 한명에게만 음직을 허락하며 아들이 없는 사람이 방계혈족의 조카사위를 양자로 정하여 호적에 올렸다면 그에게 첫 벼슬을 허락한다. 전대의 재상이나 밀직사의 친손자나 외손자로서 명목이 없는 사람은 한집에 한명씩 첫 벼슬을 허락한다. 문무실직 4품인 중사(中事), 전서(典書), 시승(侍丞), 여러 조의 정랑(정5품)이상으로서 해임된자는 비록 림시벼슬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론하지 말고 아들 한명에게만 음직을 허락하며 지방관으로 된 사람에 대하여서는 한등급을 낮추어서 그의 한 아들에게만 음직을 허락하고 태조때의 여섯 공신과 삼한벽상공신, 력대의 벽상공신과 배향공신, 전장에서 죽은 공신들에게도 그 자손들에게 한집에 한명씩 벼슬을 주는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이 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우선 치사한 문무 3품관의 친아들 한명, 조카사위, 전대 재상의 친손자, 외손자 한명이 해당되며 또한 문무실직 4품관과 해임된 5품관의 아들 한명이 해당되였다는것이다.

1309년 선효왕(충선왕)에 이르러서는 《재상의 친아들 한명에게는 첫 벼슬로 7품을 주며 현직과 치사(致仕) 3품관에게는 각각 그의 한 아들에게만 실직을 허락하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조카, 사위중 한명에게만 음직을 허락하며 문무 4품관은 현직자나 해임된자를 막론하고 각각 그 한 아들에게만 음직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고려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치사 및 현임재상의 친아들 한명, 현직에 있거나 치사한 3품관의 한 아들(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조카나 사위중에서 한명), 문무 4품관으로서의 현직자나 해임된자의 아들 한명에게만 해당되였다는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려시기 문무 5품이상과 공신에 한하여 친아들 한명에게만 음직을 주었으며 3품관이상에 한하여 친손자, 외손자, 조카, 사위에게도 음직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 음서의 대상자적용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왕실의 후손들에 관한 문제이다. 《증보문헌비고》권200《선거고》17의《음서》조에 반영된 고려시기의 음서자료에는 고 려왕실의 후손들에 관한 자료도 있다.

숙종이 즉위(1095)하여 태조의 피줄을 이은 후예로서 군적에 있는자들은 면제시키고 관직이 없는자는 벼슬길에 들어서는것을 허락하도록 하였으며 숙종 5년(1100) 태조의 친현 손의 손자, 외현손의 아들 및 태조의 동복형제의 현손의 아들, 외현손의 후손, 정통임금의 현손의 아들 및 외현손은 매 집마다 한사람에게만 벼슬을 주도록 하였고 경효왕 8년(1282)에 태조의 후손은 비록 20대의 손녀사위라도 한집에 한명씩 주는 전례에 따라 한명에게 벼슬을 허락하였으며 이미 관원이 된 사람은 뽑아서 특별히 명부에 기록하고 남반에 있으면 동반으로 옮겨주고 … 태조의 친형제의 자손은 한집에 한명씩 벼슬주는 전례에 따라 한명에게 벼슬을 허락한것을 비롯하여 왕실의 후손들에 관하여 벼슬에 등용한 자료들이 많다.

고려시기 왕실의 후손들에 대하여 제한없이 군을 봉하였는데 그런것으로 하여 고려 31대 경효왕(공민왕) 3년(1354)에 사헌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였다.

《우리 왕조에서는 임금의 후손이면 적자와 서자를 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두 작위를 봉하니 이것은 실로 옛 제도가 아닙니다. 또 이른바 작위를 계승한다는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 지위를 계승하는것인데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 그 아들이 많건적건 론하지 않고 다 군(君)을 봉하고있으니 이는 오직 적서의 차등이 없어지게 할뿐아니라 례법에 위반되는것이며 또한 한정이 있는 작위와 록봉을 가지고 끝이 없는 자손에게 다 봉하기도 곤난합니다. 청컨대 해당 관청에서 종적(宗籍; 임금집안의 족보 — 역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선대임금의 친아들의 후손으로서 정통직계 적장손(嫡長孫; 본안해가 낳은 아들의 갈래인 정통직계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역주) 및 임금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친동생 및 친중자(衆子)에게만 군을 봉하는것을 허락하되 군을 봉한 후에는 맏아들로 하여금 작위를 계승하게 하고 먼 족속에게 군을 봉한 경우 다 고신(告身; 봉건시기 벼슬임명장—역주)을 회수할것입니다.》(《증보문헌비고》권200《선거고》17《음서》)

이를 통하여 고려시기 왕실의 후손들에 대한 음서가 적극적으로 적용되였음을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는 3품이상 관리로 축소되였다.

이 시기 음서적용대상자가 품계상으로는 줄었지만 명목상으로는 그 갈래가 많아졌다. 새 왕조를 수립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음서를 적용하여 자기의 정치적기반을 닦 아나갔다. 봉건관료들의 자제들에게 벼슬을 주는것은 새 왕조의 유지강화에 확실히 필요하 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서제도는 고려시기와 일련의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일반적으로 5품이상의 관리가 되면 자기의 자손들에게 음직을 줄수 있는 《특전》이 차례졌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그것이 3품이상 관리로 축소되였으며 음서 대상자의 범위에서도 고려시기에 해당되던 외조카, 외손자가 제외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경제륙전》으로부터 시작되여 1461년에 완성된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권1 리전 취재조에는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공신 및 2품이상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원종공신이면 아들과 손자)와 실직에 있는 3품관리의 아들, 손자, 일찌기 리조, 병조, 도총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부장, 선전관을 지낸 사람들의 아들들로서 나이 20살이상이면 시험쳐서 등용한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음서대상자의 나이가 20살이상으로 제한되였으며 고려시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벼슬길에 올랐으나 이 시기에는 일정한 취재시험을 경과하여야 하였다.

물론 고려시기에도 문무재능을 시험한적이 있었다.

《선거고》17의《음서》조에는 고려 정종 7년(1041)에 태조가 세나라를 통일하던 당시에 시종한 관료의 자손들로서 평민으로 전락되여 벼슬을 하지 못한자가 있으면 해당 관청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문무재능을 시험해보고 모두 벼슬에 등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편적인것이 아니였다. 고려시기 공신 및 관리들의 후손들에 대한 벼슬등용에서 취재시험은 법적으로 규정된것이 아니여서 모두가 반드시 시험을 경과하지는 않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음서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경국대전》에 기재되여있는 적용 대상은 제외하고 실제상 《선거고》 17의 《음서》조에 기재되여있는 고려시기와 차이나는것 만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우선 충신의 후손들을 음서의 대상으로 삼은것이다.

태종이 즉위하자 권근이 글을 올려 이전 조정의 충신이였던 시중 정몽주의 자손들을 등용하여 후세사람들을 격려할것을 제기하니 승인하였으며 세종 27년(1445)에 승지 리계전의 장계에 따라 고려왕조의 충신 정몽주, 길재의 자손들을 등용하게 하였고 문종 즉위(1450)초에 도승지 리계전이 길재에게 작위와 시호를 더 추증해줄것을 제기하자 임금은 《작위와 시호나 더 추증해주는것은 실로 쓸데없는 겉치레이다.》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벼슬을 주게 하였으며 성종 원년(1470)에 고려왕조의 충신들이였던 정몽주, 길재의 후손들을 등용하도록 하였고 숙종 33년(1707)에 명령을 내리여 본도에서 길재의 후손들을 찾아내여 등용하도록 하였으며 숙종 36년(1710)에 고려의 시중 정몽주의 뒤를 이을 후손을 정하고 관직을 주게 하였고 영조 8년(1732)에 전조(銓曹)에 명령하여 고려왕조의 충신 김주의 후손들을 등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조 14년(1738)에 경상감사 리기진이 《고려의 충신 길재에게 응당시호를 내려주고 제사를 지내주어 절개와 의리를 격려하고 권유하는 방도로 삼을것입

니다.》라고 제의하자 해당 도에 지시하여 이전 조정의 충신들인 정몽주, 박상충, 길재 등 세 사람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들을 등용하게 하였다는 등의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여있다.

정몽주는 리성계의 왕위찬탈을 반대하고 고려왕조를 지키려다가 자객에 의하여 개성의 선국교에서 피살된 고려왕조의 충신이였다. 길재는 고려말기에 성균판 학정, 박사의 벼슬을 지니였는데 조선봉건왕조에 들어와서 1400년(정종 2)에 벼슬자리를 임명받았으나 두임금을 섬길수 없다고 하면서 사양한 고려왕조의 충신이였다. 김주는 고려말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압록강에 이르러 고려의 왕조가 이미 교체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3일동안 통곡하고나서 관복을 안해에게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고려왕조의 혼을 불러 장사를 지내게 하고는 명나라에 들어가 늙어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고려의 충신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고려왕조말기의 충신들의 후손들을 관리로 등용한것은 고려조정의 관리들의 후손들에 대한 회유술책이면서 동시에 조선봉건왕조에서 신하들로 하여금 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한 권유술책이였다.

숙종 24년(1698)에 단종의 왕위를 회복한 후 옛 참판 박팽년의 9대손 박경여를 장릉 참봉으로 임명하였고 영조 3년(1727) 전조(銓曹)에 옛 충신 성삼문, 박팽년의 후손들중에 같 은 성을 이은 후손이 없으면 비록 방손(傍孫: 방계혈족의 자손—역주)이나 외손(外孫: 딸이 낳은 자식—역주)이라도 찾아서 등용하게 하였다.

성삼문, 박팽년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내쫓고 단종을 다시 올려앉히려던 정변계획이 적발되여 처형된 사륙신에 속하는 사람들이였다.

이들은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수 없다는 지조를 지니고 왕위복위에 나섰다가 죽은 충 신들이였다. 이들의 후손들을 관리로 등용한것은 신하들속에 봉건충군사상을 고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뿐이였다.

우에서 본 충신들이란 봉건국가와 왕을 위하여 일정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군주 국가인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충신의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벼슬에 등용시킴으로써 왕에게 충 성을 다하도록 장려하였다. 종당에는 절대군주제로서의 봉건국가의 유지강화에 이바지하게 하자는것이였다.

또한 유신들의 자손, 봉건유교도덕의 체현자, 청렴결백한 관리들의 자손들을 음서의 대 상자로 삼은것이다.

선조 원년(1568)에 옛 유신(儒臣) 김종직의 자손들을 등용하게 하였고 인조 26년(1648)에 옛 유신들인 김장생, 장현광, 박지계, 정경세 등의 제자, 자손들로서 재능과 품행이 특이하게 뛰여난자들을 등용하게 하였으며 인종 원년(1545)에 《충》과 《효》가 뛰여난자 및 청백한 관리들에 한해서 그 후손들을 등용하여 후세사람들을 장려하도록 하였고 명종 14년(1559)에 전조(銓曹)에 지시하여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의리가 있고 청렴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절개와 의리가 있는 선비들 및 청렴결백한 관리들의 자손들을 승격시켜 임명하게 하였으며 인조 8년(1630)에 김준의 일가가 안주에서 죽으면서까지 유교도덕을 상실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그의 아들 진성에게 순서를 뛰여넘어 6품직을 주게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많다.

유교가 지배적인 통치사상으로 되여있던 조선봉건왕조에서 유신들, 유교도덕의 체현자들의 후손들을 관리로 등용하는것은 유교를 장려하고 봉건국가를 유지공고화하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섰다.

우에서 말한 충성이요, 효성이요, 의리요, 절개요, 청렴결백이요 하는것은 다 봉건유교 도덕적견지에서 평가되는 봉건왕과 봉건국가를 위한것이였다.

또한 왕실의 후손들에 대하여 음서를 적용하되 음서의 적용을 극력 제한한것이다.

영조 12년(1736)에 특별히 효녕대군의 사당을 세우고 액자를 하사하면서 그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정조 8년(1784)에 월산대군의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자손을 선발 등용하게 하였으며 13년(1789)에 양녕대군에게는 《지덕사》(至德祠), 효녕대군에게는 《청권사》(淸權祠)라는 현판을 내려주고 제사를 지내준 다음 제사를 받드는 자손들을 등용하게 하였다는 자료를 비롯하여 왕실의 후손들에게 음서를 적용하였다는 자료는 극히 적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고려시기에 비하여 왕실의 후손들에 대한 음서적용이 람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왕권의 분산을 막고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를 지향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의 자손들가운데서 청백하고 충의있는 자손들을 벼슬에 등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등용한 사실은 많다.

보는바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음서의 대상자는 고려시기에 비해볼 때 여러 갈래이 며 명목 또한 각이하였다.

그로부터 1726년 참찬관이였던 유척기로부터 음서적용에서의 페단을 없앨데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였다.

《나라에서 옛날의 어진이 및 공신, 청렴결백한 관리, 원한을 품고 죽었거나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의 자손들을 등용하는 규범은 사실 선대 임금들시기에 충성을 표창하고 청렴함을 격려하자는 아름다운 뜻에서 나온것이지만 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크게 제한이 없고 나라의 한끝에 있는 지손들도 섞여 등용되는것이 많아서 벼슬길은 점점 넓어지고 권세있는 높은 관리로 오를수 있는 요행수만 크게 열리고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명백하게 한도를 정하고 오직 적장(嫡長: 본안해가 낳은 아들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역주)만 등용하고 지손(支孫: 맏손자이외에 손자나 자손-역주)은 절대로 거론하지 말것입니다. ··· 응당 그 대수를 작정하되 4대를 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음서를 통한 관리선발등용이 규범과 규정을 벗어나서 무질 서하게 진행되였음을 시사해준다.

음서의 대상자가 현명한가 아닌가를 론하지도 않고 적장손이면 《조상의 덕》을 입게 하였으며 지차자손들도 문서에 빙자하면서 모두 권세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연줄을 놓아 벼슬자리에 들어가는것이 하나의 페단으로, 풍으로 되여 걷잡을수 없게 된것은 그 표현으로 된다. 원래 맏아들과 맏손자만이 《조상의 덕》으로 벼슬에 등용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이 혼잡을 이루고 요행수를 바라는 길이 크게 열려지게 되면서 음서의 성행으로 관료진영에는 《조상의 덕》으로 선발등용된자들이 범람하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 신분제도가 강하게 지배하고있던 조선봉건왕조에서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이였다. 음서는 사실상 신분제도의 산물이였다. 일반백성은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쳐 싸워도 그 공로로 벼슬에 등용될수 없었으며 일반백성들속에 효자가 있다 해도 그들은 발탁등용될수 없었다.

셋째로, 음서를 통하여 임명받는 관직등급이다.

음서를 통하여 받는 관직등급에 관한 문제는 음서를 통하여 받는 첫 벼슬이 높은가, 낮

은가 하는 관직의 품계상문제이다.

세나라시기에는 임금이 공신의 자손을 직접 등용하였는바 높은 급의 관직을 제수하였다. 고구려 동천왕이 뉴유의 아들 다우에게 제수한 대사자는 고구려의 품계 12등급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것이다.

신라의 진평왕이 찬덕의 아들 해론에게 제수한 대나마는 신라의 중앙관직의 품계 17등 급에서 10번째에 해당되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세나라시기에는 음서를 통하여 받는 관직이 비교적 높았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임금이 직접 하사하였던 조건에서 임금의 권위와 관련되기때문이였다.

고려시기에는 음서를 통한 관직등급이 비교적 낮은 편이였다.

고려 현종 2년(1011)에 도순검사 양규가 절개를 지키고 죽자 그의 아들 대춘을 교서 랑(정9품)으로 등용하였으며 정종 8년(1042)에 평장사 류징필의 가문이 공로있는 가문으로서 《조상들의 덕》을 이어받아 력대 임금들을 보좌한것으로 하여 그의 아들 작에게 공부(工部)의 서령사(리속의 하나)벼슬을 주었고 문종 원년(1047)에 중추사 림유간이 오래동안 간관직(諫官職)에 있으면서 나라일에 충성을 다하였다고 하여 그의 아들 량개에게 8품관직을 주었고 문종 6년(1025) 좌사랑중 하공진이 나라를 위해 자기 한몸을 바쳤다고 하여 그의 아들 하칙충에게 5품관직을 주었으며 내사령 최사위를 현종의 종묘에 배향하고 그의 조카에게 차례를 뛰여넘어 8품관직을 주었고 경효왕(공민왕) 20년(1371)에 리존오의 아들 리안국을 등용하여 임금의 수례를 맡아보는 직장(정7품)으로 임명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고려시기에는 음서를 통하여 받는 첫 벼슬이 사람마다, 시기마다 등급 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5품관직을 받은 후손이 있는가 하면 9품관직, 아전직까지 받은 후 손도 있었다. 이것은 고려시기에 음직을 줌에 있어서 일정한 규례가 없이 시기(왕대)에 따라 제멋대로 주었음을 말하여준다.

양규는 도순검사로서 7차의 외적파의 큰 싸움에서 침략군을 격멸하고 많은 무기와 군 마를 로획하였으며 3만여명의 주민들을 구출하고 애전싸움에서 전사하였다. 그의 공로는 대 단히 컸다. 그러나 이 시기(현종) 그의 아들에게 9품직을 주는데 그치였다.

한편 하공진은 같은 시기 상서도성의 좌사랑중으로서 외적의 군영에 가서 화의를 요 청하여 철수시키고 적군에 붙잡혀서 귀국을 꾀하다가 탈출계획이 루설되여 살해되였다.

그의 공로는 양규와 류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문종때) 그의 아들에게 5품관직을 주었다. 양규와 하공진은 동시대 사람이면서 공로도 류사하였지만 다른 시대에 음직을 주다나니 그 품계의 높낮이에서 서로 달랐다.

우의 사실을 통하여 고려시기 음직을 줌에 있어서 일정한 규정이 없었음을 알수 있다. 고려초기 즉 국토통일시기에는 관품계가 정해져있지 못하였다. 첫 통일국가로서 체모에 맞는 관제를 정하고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문종시기에 비로소 일정하게나마 관제가 정해졌지만 그후에도 여러번 개정되다보니 그 영향으로 음직적용에서도 고려시기 전반에 관통되는 정연한 체계가 서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 권200 《선거고》 17의《음서》조에 반영된 고려시기 음서관계자료를 통하여보면 전반적으로 음서로 받는 첫 벼슬등급이 대체로 낮았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고려시기 음서를 통한 벼슬등용이 제도적조치로 되였지만 음서에 의한 벼슬등용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고려사》 권73 선거지 서문에서 《비록 이름있는 높은 관리의 자손이라도 과거시험을 치

지 않고서는 벼슬할수 없었다.》고 한 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고려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하여 관리들을 등용하였으며 음서는 그들에 대한 회유술책으로 적용되었을뿐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음서를 통하여 받는 관등급이 비교적 높았다.

대종이 즉위하여 세자때의 스승 원천석의 아들 원희를 불리 편전에서 시중들게 하다가 기천현감벼슬을 주었으며 임진조국전쟁후 임금이 대신 윤두수가 안해없이 외롭게 늙어가므로 맏아들 윤방을 품계를 뛰여넘어 승급시켜 등용하게 하였고 인조 8년(1630) 남이흥이 절개를 지켜 죽은것으로 하여 그의 맏아들 두극이 3년상을 마치면 그를 현감(종6품)으로 임명하게 하였으며 효종 10년(1659) 문순공 리황의 적손이 나이가 어리므로 지손인 리성철로 적손을 대신하여 고을원으로 임명하게 하였고 숙종 13년(1687)에 공자사당에서 배향하는 여러 어진이들의 자손들을 모두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세습하게 하고 그것을 규례로 삼게 하였으며 고종 4년(1867)에 린평대군의 사당을 참배하고 제사를 받드는 자손인 리연응에게는 례조참판(종2품)을 제수하게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있다.

우의 자료를 보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고려시기에 비하여 음서를 통한 벼슬등급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론 첫 벼슬로서의 음직이 다 높은것은 아니였다. 종9 품직인 참봉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음서로 받는 벼슬등급이 높은것은 사 실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음서를 통한 관리등용이 활발히 진행되였던것만큼 음서로 받는 관 직등급 또한 높아진것은 필연적이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세 우리 나라의 관리등용법으로서의 음서는 철두철미 봉건 통치배들을 위한것이였으며 봉건국가의 유지강화를 위한것으로서 반인민적인것이였다.

그 반인민성은 우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관료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등용방법이라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피착취, 피압박근로인민대중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봉건통치배들의 독점물이였다는데 있다.

우리는 중세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의 관리선발등용의 반인민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증보, 선거고